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168

발의연월일: 2023. 4. 6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병욱·이성만

정일영 · 최강욱 · 한병도

정춘숙 • 민형배 • 강민정

최혜영 · 김민석 · 민병덕

이용빈 · 홍기원 · 김철민

전재수 · 임호선 · 김남국

윤준병 • 류호정 • 양경숙

김홍걸 · 김영호 · 조승래

의원(2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학·퇴학 등의 조치 이행을 미루기 위하여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,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고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불복절차 진행 중에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학교의 장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함.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고,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,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함. 또한,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제7항,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학교의 장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3(피해학생 등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특례) ①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- 1.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경우(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
  - 2.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

경우(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 한다)

② 제1항의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4(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)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,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,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해학생 등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재판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(행정심판) ① ~ ③	제17조의2(행정심판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⑦ 학교의 장은 행정심판 절차
	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과
	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
	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
	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<u> &lt;신 설&gt;</u>	제17조의3(피해학생 등의 진술권
	보장에 관한 특례) ① 「행정
	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위원
	회 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	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
	정이 없으면 피해학생 또는 그
	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
	회를 주어야 한다.
	1.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
	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
	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
	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
	심판을 청구한 경우(같은 법
	제30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

<신 설>

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

2.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
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
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
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
소송을 제기한 경우(같은 법
제23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
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
② 제1항의 경우 피해학생 또
는 그 보호자는 변호사로 하여
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
할 수 있다.

제17조의4(재판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)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하며,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이내에,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이내에 하여야한다.